**「민사집행법」**

**□ 개 요**

일본의 민사집행법 법률 제4호는 소화54<1979>년 3월 30일 공포되었으며, 2018년 6월 8일 개정되었다.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채무자의 재산 개시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총 5장 207조로 이루어져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第一条　趣旨第二条　執行機関第三条　執行裁判所第四条　任意的口頭弁論第五条　審尋第六条　執行官等の職務の執行の確保第七条　立会人第八条　休日又は夜間の執行第九条　身分証明書等の携帯第十条　執行抗告第十一条　執行異議第十二条　取消決定等に対する執行抗告第十三条　代理人第十四条　費用の予納等第十五条　担保の提供第十六条　送達の特例第十七条　民事執行の事件の記録の閲覧等第十八条　官庁等に対する援助請求等第十九条　専属管轄第二十条　民事訴訟法の準用第二十一条　最高裁判所規則**第二章 強制執行****第一節 総則**第二十二条　債務名義第二十三条　強制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の範囲第二十四条　外国裁判所の判決の執行判決第二十五条　強制執行の実施第二十六条　執行文の付与(~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　執行文の再度付与等第二十九条　債務名義等の送達第三十条　期限の到来又は担保の提供に係る場合の強制執行第三十一条　反対給付又は他の給付の不履行に係る場合の強制執行第三十二条　執行文の付与等に関する異議の申立て第三十三条　執行文付与の訴え第三十四条　執行文付与に対する異議の訴え第三十五条　請求異議の訴え第三十六条　執行文付与に対する異議の訴え等に係る執行停止の裁判第三十七条　終局判決における執行停止の裁判等第三十八条　第三者異議の訴え第三十九条　強制執行の停止第四十条　執行処分の取消し第四十一条　債務者が死亡した場合の強制執行の続行第四十二条　執行費用の負担**第二節 金銭の支払を目的とする債権についての強制執行****第一款 不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第一目 通則第四十三条　不動産執行の方法第四十四条　執行裁判所**第二目 強制競売**第四十五条　開始決定等第四十六条　差押えの効力第四十七条　二重開始決定第四十八条　差押えの登記の嘱託等第四十九条　開始決定及び配当要求の終期の公告等第五十条　催告を受けた者の債権の届出義務第五十一条　配当要求第五十二条　配当要求の終期の変更第五十三条　不動産の滅失等による強制競売の手続の取消し第五十四条　差押えの登記の抹消の嘱託第五十五条　売却のための保全処分等第五十五条の二　相手方を特定しないで発する売却のための保全処分等第五十六条　地代等の代払の許可第五十七条　現況調査第五十八条　評価第五十九条　売却に伴う権利の消滅等第六十条　売却基準価額の決定等第六十一条　一括売却第六十二条　物件明細書第六十三条　剰余を生ずる見込みのない場合等の措置第六十四条　売却の方法及び公告第六十四条の二　内覧第六十五条　売却の場所の秩序維持第六十六条　買受けの申出の保証第六十七条　次順位買受けの申出第六十八条　債務者の買受けの申出の禁止第六十八条の二　買受けの申出をした差押債権者のための保全処分等第六十八条の三　売却の見込みのない場合の措置第六十九条　売却決定期日第七十条　売却の許可又は不許可に関する意見の陳述第七十一条　売却不許可事由第七十二条　売却の実施の終了後に執行停止の裁判等の提出があつた場合の措置第七十三条　超過売却となる場合の措置第七十四条　売却の許可又は不許可の決定に対する執行抗告第七十五条　不動産が損傷した場合の売却の不許可の申出等第七十六条　買受けの申出後の強制競売の申立ての取下げ等第七十七条　最高価買受申出人又は買受人のための保全処分等第七十八条　代金の納付第七十九条　不動産の取得の時期第八十条　代金不納付の効果第八十一条　法定地上権第八十二条　代金納付による登記の嘱託第八十三条　引渡命令第八十三条の二　占有移転禁止の保全処分等の効力第八十四条　売却代金の配当等の実施第八十五条　配当表の作成第八十六条　売却代金第八十七条　配当等を受けるべき債権者の範囲第八十八条　期限付債権の配当等第八十九条　配当異議の申出第九十条　配当異議の訴え等第九十一条　配当等の額の供託第九十二条　権利確定等に伴う配当等の実施**第三目 強制管理**第九十三条　開始決定等第九十三条の二　二重開始決定第九十三条の三　給付義務者に対する競合する債権差押命令等の陳述の催告第九十三条の四　給付請求権に対する競合する債権差押命令等の効力の停止等第九十四条　管理人の選任第九十五条　管理人の権限第九十六条　強制管理のための不動産の占有等第九十七条　建物使用の許可第九十八条　収益等の分与第九十九条　管理人の監督第百条　管理人の注意義務第百一条　管理人の報酬等第百二条　管理人の解任第百三条　計算の報告義務第百四条　強制管理の停止第百五条　配当要求第百六条　配当等に充てるべき金銭等第百七条　管理人による配当等の実施第百八条　管理人による配当等の額の供託第百九条　執行裁判所による配当等の実施第百十条　弁済による強制管理の手続の取消し第百十一条　強制競売の規定の準用**第二款 船舶に対する強制執行**第百十二条　船舶執行の方法第百十三条　執行裁判所第百十四条　開始決定等第百十五条　船舶執行の申立て前の船舶国籍証書等の引渡命令第百十六条　保管人の選任等第百十七条　保証の提供による強制競売の手続の取消し第百十八条　航行許可第百十九条　事件の移送第百二十条　船舶国籍証書等の取上げができない場合の強制競売の手続の取消し第百二十一条　不動産に対する強制競売の規定の準用**第三款 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第百二十二条　動産執行の開始等第百二十三条　債務者の占有する動産の差押え第百二十四条　債務者以外の者の占有する動産の差押え第百二十五条　二重差押えの禁止及び事件の併合第百二十六条　差押えの効力が及ぶ範囲第百二十七条　差押物の引渡命令第百二十八条　超過差押えの禁止等第百二十九条　剰余を生ずる見込みのない場合の差押えの禁止等第百三十条　売却の見込みのない差押物の差押えの取消し第百三十一条　差押禁止動産第百三十二条　差押禁止動産の範囲の変更第百三十三条　先取特権者等の配当要求第百三十四条　売却の方法第百三十五条　売却の場所の秩序維持等に関する規定の準用第百三十六条　手形等の提示義務第百三十七条　執行停止中の売却第百三十八条　有価証券の裏書等第百三十九条　執行官による配当等の実施第百四十条　配当等を受けるべき債権者の範囲第百四十一条　執行官の供託第百四十二条　執行裁判所による配当等の実施**第四款 債権及びその他の財産権に対する強制執行****第一目 債権執行等**第百四十三条　債権執行の開始第百四十四条　執行裁判所第百四十五条　差押命令第百四十六条　差押えの範囲第百四十七条　第三債務者の陳述の催告第百四十八条　債権証書の引渡し第百四十九条　差押えが一部競合した場合の効力第百五十条　先取特権等によつて担保される債権の差押えの登記等の嘱託第百五十一条　継続的給付の差押え第百五十一条の二　扶養義務等に係る定期金債権を請求する場合の特例第百五十二条　差押禁止債権第百五十三条　差押禁止債権の範囲の変更第百五十四条　配当要求第百五十五条　差押債権者の金銭債権の取立て第百五十六条　第三債務者の供託第百五十七条　取立訴訟第百五十八条　債権者の損害賠償第百五十九条　転付命令第百六十条　転付命令の効力第百六十一条　譲渡命令等第百六十二条　船舶の引渡請求権の差押命令の執行第百六十三条　動産の引渡請求権の差押命令の執行第百六十四条　移転登記等の嘱託第百六十五条　配当等を受けるべき債権者の範囲第百六十六条　配当等の実施第百六十七条　その他の財産権に対する強制執行**第二目 少額訴訟債権執行**第百六十七条の二　少額訴訟債権執行の開始等第百六十七条の三　執行裁判所第百六十七条の四　裁判所書記官の執行処分の効力等第百六十七条の五　差押処分第百六十七条の六　費用の予納等第百六十七条の七　第三者異議の訴えの管轄裁判所第百六十七条の八　差押禁止債権の範囲の変更第百六十七条の九　配当要求第百六十七条の十　転付命令等のための移行第百六十七条の十一　配当等のための移行等第百六十七条の十二　裁量移行第百六十七条の十三　総則規定の適用関係第百六十七条の十四　債権執行の規定の準用**第五款 扶養義務等に係る金銭債権についての強制執行の特例**第百六十七条の十五　扶養義務等に係る金銭債権についての間接強制第百六十七条の十六　扶養義務等に係る定期金債権を請求する場合の特例**第三節 金銭の支払を目的としない請求権についての強制執行**第百六十八条　不動産の引渡し等の強制執行第百六十八条の二　明渡しの催告第百六十九条　動産の引渡しの強制執行第百七十条　目的物を第三者が占有する場合の引渡しの強制執行第百七十一条　代替執行第百七十二条　間接強制(~第百七十三条)第百七十四条　意思表示の擬制(~第百七十九条)**第三章 担保権の実行としての競売等**第百八十条　不動産担保権の実行の方法第百八十一条　不動産担保権の実行の開始第百八十二条　開始決定に対する執行抗告等第百八十三条　不動産担保権の実行の手続の停止第百八十四条　代金の納付による不動産取得の効果(~第百八十六条)第百八十七条　担保不動産競売の開始決定前の保全処分等第百八十八条　不動産執行の規定の準用第百八十九条　船舶の競売第百九十条　動産競売の要件第百九十一条　動産の差押えに対する執行異議第百九十二条　動産執行の規定の準用第百九十三条　債権及びその他の財産権についての担保権の実行の要件等第百九十四条　担保権の実行についての強制執行の総則規定の準用第百九十五条　留置権による競売及び民法、商法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る換価のための競売**第四章 財産開示手続**第百九十六条　管轄第百九十七条　実施決定第百九十八条　期日指定及び期日の呼出し第百九十九条　財産開示期日第二百条　陳述義務の一部の免除第二百一条　財産開示事件の記録の閲覧等の制限第二百二条　財産開示事件に関する情報の目的外利用の制限第二百三条　強制執行及び担保権の実行の規定の準用**第五章 罰則**第二百四条　公示書等損壊罪第二百五条　陳述等拒絶の罪第二百六条　過料に処すべき場合第二百七条　管轄等**附　則** | **제1장 총칙**제1조 취지제2조 집행기관제3조 집행재판소제4조 임의적 구두변론제5조 심문제6조 집행관 등의 직무 집행의 확보제7조 입회인제8조 휴일 또는 야간 집행제9조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제10조 집행항고제11조 집행이의제12조 취소결정 등에 대한 집행항고제13조 대리인제14조 비용의 예납등제15조 담보의 제공제16조 송달의 특례제17조 민사집행사건 기록의 열람 등제18조 관청 등에 대한 원조청구 등제19조 전속관할제2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21조 최고재판소규칙**제2장 강제집행****제1절 총칙**제22조 채무명의제23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24조 외국재판소 판결의 집행판결제25조 강제집행의 실시제26조 집행문의 부여(~제27조)제28조 집행문 재도부여 등제29조 채무명의 등의 송달제30조 기한의 도래 또는 담보의 제공 관련 강제집행제31조 반대급부 또는 다른 급부의 불이행과 관련된 경우의 강제집행제32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제3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35조 청구이의의 소제36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과 관련된 집행정지의 재판제37조 종국판결에서의 집행정지의 재판 등제38조 제3자 이의의 소제39조 강제집행의 정지제40조 집행처분의 취소제41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강제집행의 속행제42조 집행비용의 부담**제2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목 통칙제43조 부동산집행의 방법제44조 집행재판소**제2목 강제경매**제45조 개시 결정 등제46조 압류의 효력제47조 이중개시결정제48조 압류 등기의 촉탁 등제49조 개시결정 및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공고 등제50조 최고를 받은 자의 채권신고의무제51조 배당요구제52조 배당요구의 종기 변경제53조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의 취소제54조 압류 등기의 말소의 촉탁제55조 매각을 위한 보전 처분 등제55조의2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매각을 위한 보전 처분 등제56조 지대(地代) 등의 대리지불의 허가제57조 현황조사제58조 평가제59조 매각에 따른 권리의 소멸 등제60조 매각기준가액의 결정 등제61조 일괄매각제62조 물건명세서제63조 잉여가 발생할 예정이 없는 경우 등의 조치제64조 매각의 방법 및 공고제64조의2 내부견학[内覧]제65조 매각 장소의 질서유지제66조 매수신청의 보증제67조 차순위매수신청제68조 채무자의 매수 신청 금지제68조의2 매수 신청한 압류채권자를 위한 보전처분 등제68조의3 매각 예정이 없는 경우의 조치제69조 매각결정기일제70조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에 관한 의견의 진술제71조 매각불허가사유제72조 매각 실시 종료 후에 집행정지의 재판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조치제73조 초과 매각이 되는 경우의 조치제74조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집행항고제75조 부동산이 손상된 경우의 매각 불허가 신청 등제76조 매수 신청 후 강제경매신청의 철회 등제77조 최고가매수신청인 또는 매수인을 위한 보전처분 등제78조 대금의 납부제79조 부동산의 취득 시기제80조 대금미납부의 효과제81조 법정지상권제82조 대금 납부에 따른 등기의 촉탁제83조 인도명령제83조의2 점유이전금지의 보전 처분 등의 효력제84조 매각대금의 배당 등의 실시제85조 배당표의 작성제86조 매각대금제87조 배당 등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범위제88조 기한부채권의 배당 등제89조 배당이의신청제90조 배당이의의 소 등제91조 배당 등의 금액의 공탁제92조 권리 확정 등에 따른 배당 등의 실시**제3목 강제관리**제93조 개시 결정 등제93조의2 이중개시결정제93조의3 급부의무자에 대한 경합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의 진술의 최고제93조의4 급부청구권에 대한 경합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의 효력의 정지 등제94조 관리인의 선임제95조 관리인의 권한제96조 강제관리를 위한 부동산의 점유 등제97조 건물사용허가제98조 수익 등의 분여제99조 관리인의 감독제100조 관리인의 주의의무제101조 관리인의 보수 등제102조 관리인의 해임제103조 계산의 보고의무제104조 강제관리의 정지제105조 배당요구제106조 배당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금전 등제107조 관리인에 의한 배당 등의 실시제108조 관리인에 의한 배당 등의 금액의 공탁제109조 집행재판소에 의한 배당 등의 실시제110조 변제에 따른 강제관리절차의 취소제111조 강제경매 규정의 준용**제2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제112조 선박집행의 방법제113조 집행재판소제114조 개시 결정 등제115조 선박집행신청전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제116조 보관인의 선임 등제117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제118조 선박운행허가제119조 사건의 이송제120조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제121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규정의 준용**제3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22조 동산집행의 개시 등제123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압류제124조 채무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압류제125조 이중압류의 금지 및 사건의 병합제126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제127조 압류물의 인도 명령제128조 초과압류의 금지 등제129조 잉여가 발생할 예정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금지 등제130조 매각 예정이 없는 압류물의 압류 취소제131조 압류금지동산제132조 압류금지동산의 범위의 변경제133조 선취특권자 등의 배당 요구제134조 매각의 방법제135조 매각 장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36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제137조 집행정지 중인 매각제138조 유가증권의 배서 등제139조 집행관에 의한 배당 등의 실시제140조 배당 등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범위제141조 집행관의 공탁제142조 집행재판소에 의한 배당 등의 실시**제4관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제1목 채권집행 등**제143조 채권집행의 개시제144조 집행재판소제145조 압류명령제146조 압류의 범위제14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 최고제148조 채권증서의 인도제149조 압류가 일부 경합한 경우의 효력제150조 선취특권 등에 따라 보장되는 채권 압류의 등기 등의 촉탁제151조 계속적 급부의 압류제151조의2 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정기금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제152조 압류금지채권제153조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변경제154조 배당요구제155조 압류채권자의 금전채권 추심제156조 제3채무자의 공탁제157조 추심 소송제158조 채권자의 손해배상제159조 전부(轉付)명령제160조 전부명령의 효력제161조 양도명령 등제162조 선박의 인도청구권의 압류명령의 집행제163조 동산의 인도청구권의 압류명령의 집행제164조 이전등기 등의 촉탁제165조 배당 등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범위제166조 배당 등의 실시제167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제2목 소액소송채권집행**제167조의2 소액소송채권집행의 개시 등제167조의3 집행재판소제167조의4 재판소 서기관의 집행처분의 효력 등제167조의5 압류처분제167조의6 비용의 예납 등제167조의7 제3자 이의소송의 관할재판소제167조의8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제167조의9 배당요구제167조의10 전부명령 등을 위한 이행제167조의11 배당 등을 위한 이행 등제167조의12 재량이행제167조의13 총칙 규정의 적용 관계제167조의14 채권집행 규정의 준용**제5관 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례**제167조의15 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금전채권에 대한 간접강제제167조의16 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정기금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제3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제168조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제168조의2 명도의 최고제169조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제170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의 강제집행제171조 대체집행제172조 간접강제(~제173조)제174조 의사표시의 의제(~제179조)**제3장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 등**제180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방법제181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개시제182조 개시 결정에 대한 집행항고 등제183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절차의 정지제184조 대금 납부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제186조)제187조 담보부동산경매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등제188조 부동산 집행 규정의 준용제189조 선박의 경매제190조 동산 경매의 요건제191조 동산의 압류에 대한 집행이의제192조 동산 집행의 규정 준용제193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요건 등제194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총칙 규정의 준용제195조 유치권에 따른 경매 및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경매**제4장 재산개시절차**제196조 관할제197조 실시 결정제198조 기일지정 및 기일의 소환제199조 재산개시일제200조 진술의무의 일부 면제제201조 재산개시사건의 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제202조 재산개시사건에 관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제203조 강제집행 및 담보권의 실행 규정의 준용**제5장 벌칙**제204조 공시서 등 손괴죄제205조 진술 등 거부죄제206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제207조 관할 등**부칙** |